

대전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단109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6. 6. 24. 접수 제100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1. 9. 13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조영범

별지